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예산의 일반원칙(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기 관 명 선아유치원
 내 용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에 따라 유치원의 회계연도는 유치원의 학년도에 따르므로,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개시하고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출납폐쇄 기간)에 따라 유치원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는 3월 20일을 기준으로 폐쇄하고,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에 따라 당해 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선아유치원은 아래 [표1]와 같이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하는 지출 건을 예산 이월 등의 절차 없이 다음연도에 지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표1] 선아유치원 회계연도 위반 지출 내역(현금출납부)

연번	집행일자	거래일자	적요	지출(원)	채주
1	2018-05-02	2018. 1~2월	식재료1월분	896,510	○○○
2	2018-05-02	2017. 8월	2017년8월식재료	252,060	○○○
3	2018-05-02	2017. 9월	2017년9월식재료	702,360	○○○
4	2018-05-23	2017. 10~11월	2017식재료	397,350	○○○
5	2020-03-26	2020-02-13	수수료 지출품의	3,110	우체국
6	2020-03-26	2020-02-13	행사비 지출품의	66,000	키○○람
7	2020-03-26	2020-02-14	학습준비물 구입 지출품의	80,100	○○○크라프트
8	2020-03-26	2020-02-14	간식 구입 지출품의	111,340	(주)○○○마트고양점
9	2020-03-26	2020-02-14	급식재료 구입 지출품의	57,040	(주)○○○마트고양점

연번	집행일자	거래일자	적요	지출(원)	채주
10	2020-03-26	2020-02-14	문구 및 행사물품 구입 지출품의	89,590	○○(주)
11	2020-03-26	2020-02-17	간식 구입 지출품의	60,240	(주)○○○마트고양점
12	2020-03-26	2020-02-17	급식재료 구입 지출품의	7,200	○○○○○
13	2020-03-26	2020-02-18	간식 구입 지출품의	17,120	(주)○○○마트고양점
14	2020-03-26	2020-02-20	행사물품 구입 지출품의	154,500	(주)○○○
15	2020-03-26	2020-02-20	수용비 지출품의	35,500	○○○커피
16	2020-03-26	2020-02-20	간식 구입 지출품의	35,840	(주)○○○마트고양점
17	2020-03-26	2020-02-21	수용비 지출품의	18,000	추○○○
18	2020-03-26	2020-02-21	행사비 지출품의	45,000	○○○작은마을
19	2020-03-26	2020-02-21	문구 구입 지출품의	160,335	○○○문구
20	2020-03-26	2020-02-21	간식 구입 지출품의	8,000	(주)○○○마트고양점
21	2020-03-26	2020-02-23	수용비 지출품의	76,600	○○○마트
22	2020-03-26	2020-02-24	간식 구입 지출품의	52,200	○○○마트
23	2020-03-26	2020-02-24	긴급돌봄 간식 및 소모품 구입 지출품의	14,720	○○○○○
24	2020-03-26	2020-02-24	사무용품 구입 지출품의	94,550	○○○(키드키즈몰)
25	2020-03-26	2020-02-26	학습자료 구입 지출품의	82,600	○○○문구
26	2020-03-26	2020-02-26	수용비 지출품의	16,900	○○○커피
27	2020-03-26	2020-02-27	통학차량 주유비 지출품의	80,000	○○○주유소
28	2020-03-26	2020-02-28	수용비 지출품의	15,900	(주)○○○마트고양점
29	2020-03-26	2020-02-29	수수료 지출품의	900	○○○카드
30	2020-03-26	2020-02-15	통학차량 주유비 지출품의	73,000	○○○주유소
31	2020-03-26	2020-02-13	수용비 지출품의	49,410	○○○
32	2020-03-26	2020-02-16	사무용품 구입 지출품의	8,300	○○○풍동점
33	2020-03-26	2020-02-24	수용비 지출품의	98,820	○○○(주)
34	2020-03-26	2020-02-14	지연지출금 지출품의	52,880	(주)○○○마트고양점
35	2020-03-26	2020-02-24	지연지출금 지출품의	52,110	○○○마트
합 계				3,966,085	

조치할 사항 선아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부정당 채주 집행)
 기 관 명 선아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57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따라 유치원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집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3조(지출의 방법)에 따라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아유치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정당 채주에게 ○○ 개인 명의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대금을 선 결제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 개인계좌로 총 80건, 74,544,323원의 거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2] 선아유치원 부정당 채주 대금 지급내역

연번	거래일자	적요	지출(원)	실지급처
1	2018-05-02	식재료1월분	896,510	○○○
2	2018-03-30	공기청정기2	898,000	○○○
3	2018-05-02	2017년8월식재료	252,060	○○○
4	2018-05-02	2017년9월식재료	702,360	○○○
5	2018-05-23	2017식재료	397,350	○○○
6	2018-06-04	3월식재료	263,600	○○○
7	2018-06-04	3월운영비	2,241,589	○○○
8	2018-06-04	3월간식비	840,290	○○○
9	2018-06-26	은하반에어컨	1,669,000	○○○
10	2018-07-04	4월운영비	1,204,030	○○○
11	2018-07-04	4월간식비	745,440	○○○
12	2018-07-04	5월운영비	719,875	○○○
13	2018-07-04	5월간식비	460,640	○○○
14	2018-07-04	6월운영비	1,816,560	○○○
15	2018-07-04	6월간식비	685,600	○○○

연번	거래일자	적요	지출(원)	실지급처
16	2018-07-10	직원근로소득세	1,747,880	○○○
17	2018-07-10	교직원지방세납	174,680	○○○
18	2018-07-12	○○○진료비	277,638	○○○
19	2018-08-01	유치원재산세	154,590	○○○
20	2018-08-08	7월식재료	125,300	○○○
21	2018-08-08	7월운영비	1,079,752	○○○
22	2018-08-08	7월간식비	448,630	○○○
23	2018-08-31	8월운영비	567,480	○○○
24	2018-08-31	8월간식비	508,870	○○○
25	2018-09-03	8월식재료	1,302,950	○○○
26	2018-09-21	추석교직원선물	425,040	○○○
27	2018-09-25	○○○추석명절	200,000	○○○
28	2018-09-26	삼성노트북	1,097,100	○○○
29	2018-10-01	9월식재료	1,099,450	○○○
30	2018-10-01	9월운영비	1,211,370	○○○
31	2018-10-01	9월간식	463,680	○○○
32	2018-10-08	○○북클럽36s	4,384,000	○○○
33	2018-11-03	10월식재료	509,030	○○○
34	2018-11-03	10월운영비	2,442,875	○○○
35	2018-11-03	10월간식비	509,030	○○○
36	2018-12-04	11월양파외21종	193,530	○○○
37	2018-12-04	11월운영비	1,159,330	○○○
38	2018-12-04	11월간식	593,200	○○○
39	2018-12-28	12월운영비	1,162,293	○○○
40	2018-12-29	12월식재료	416,660	○○○
41	2018-12-31	12월간식비	492,300	○○○
42	2019-02-01	교사실컴퓨터	610,000	○○○
43	2019-02-01	설명절선물	538,800	○○○
44	2019-02-04	1월운영비	1,162,335	○○○
45	2019-02-04	01월간식비	548,600	○○○
46	2019-02-11	1월식재료2	263,300	○○○
47	2019-02-28	2월식재료	277,030	○○○
48	2019-02-28	2월운영비	1,635,625	○○○
49	2019-02-28	2월간식비	302,560	○○○
50	2019-03-31	3월운영비	1,546,490	○○○
51	2019-03-31	3월간식비	728,680	○○○
52	2019-04-23	피아노착불	35,000	○○○
53	2019-04-25	연말/사학정산	1,221,800	○○○
54	2019-04-30	4월식재료	220,530	○○○
55	2019-04-30	디지털피아노	452,760	○○○
56	2019-04-30	컴퓨터및모니터	1,246,100	○○○
57	2019-04-30	모니터3	777,000	○○○
58	2019-04-30	4월간식비	788,750	○○○
59	2019-04-30	4월운영비	1,790,437	○○○
60	2019-05-30	노트북○○○○○○○	1,389,000	○○○
61	2019-05-31	5월운영비	1,151,969	○○○
62	2019-06-03	5월간식비	801,150	○○○
63	2019-06-30	6월간식비	884,930	○○○
64	2019-06-30	6월운영비	2,859,440	○○○

연번	거래일자	적요	지출(원)	실지급처
65	2019-07-31	가스레인지2개	518,000	○○○
66	2019-08-01	7월식재료	339,840	○○○
67	2019-08-03	7월운영비	1,457,390	○○○
68	2019-08-03	7월간식비	849,800	○○○
69	2019-08-03	제습기외1	468,000	○○○
70	2019-09-02	8월식재료	212,330	○○○
71	2019-09-02	8월운영비	1,643,165	○○○
72	2019-09-02	8월간식비	954,520	○○○
73	2019-09-30	9월운영비	1,550,950	○○○
74	2019-09-30	9월간식비	892,330	○○○
75	2019-11-01	10월운영비	3,280,190	○○○
76	2019-11-01	10월간식비	798,190	○○○
77	2019-11-11	18년승합차보험	1,683,590	○○○
78	2019-11-25	사학공제반환9	393,090	○○○
79	2019-11-25	사학공제반환10	393,090	○○○
80	2020-10-25	○○TV구매	1,338,000	○○○
합 계			74,544,323	

조치할 사항 선아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현장체험학습차량 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선아유치원
내 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4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는 자는 자가 또는 임대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지입차량으로는 운행할 수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및 제36조(계약담당자)에 따라 유치원에서의 계약담당자는 유치원의 원장이며, 계약의 원칙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성실히 체결하여야 하며, 제37조(계약서의 작성)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유치원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아유치원은 아래 [표3]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차량 운영 시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운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차량 계약 및 대금 집행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3] 선아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지출 내역

연번	거래일자	적요	채주	지출액(원)	비고
1	2018-06-12	부천체험관차량	○○○	60,000	
2	2018-07-13	늘노리차량B	○○○	250,000	
3	2018-11-13	차량지원1	○○○	250,000	
4	2019-07-05	차량지원1	○○○	250,000	
5	2019-07-05	차량지원2	○○○	250,000	
6	2019-09-18	정발산차량지원	○○○	50,000	
합 계				1,110,000	

조치할 사항 선아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선아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 의거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제33조(지출의 방법)에 의거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하며,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및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규정된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등의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유치원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의거 유치원은 강사료 등의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하며,

「2017년 사립유치원 현장 맞춤형 회계 컨설팅(연수)」,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2019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길라잡이」에 의거 유치원회계 지출 시에는 예산 집행 품의, 견적서 징구, 계약, 대가지급, 장부정리 및 증빙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증빙서류 편철 시 지출결의서, 무통장 입금표(영수증 등), 청구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 계약서, 견적서, 계약구비서류, 품의요구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선아유치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치원회계 지출장부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1. 지출결의서 날인 생략

2018. 3월부터 2019. 2월까지 그리고 2019. 10월부터 2020. 2월까지(2019. 3월부터 2020년 9월 기간은 에듀파인으로 작성 및 보관)의 기간 동안 징수(수입, 감액, 반납)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담당(작성)자와 원장의 날인을 누락하여 작성 및 관리하였다.

2. 무증빙 지출

지출증빙서 작성 시 적격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에도 다수의 지출 건에 대해 거래명세표 또는 간이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거나 증빙자료 없이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선아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